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164 관 련
----------	-------------

제안연월일 : 2021년 3월 5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위법령에 따라 청소년 이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문화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의 이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감면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의2).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의2 중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을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설치, 위임·위탁하는 문화시설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조의2제2항의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수정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수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6조의2(청소년 문화 시설 이용지원) 시장은 청소년 문화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을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제6조의2(청소년 문화 시설 이용지원) 시장은 청소년 문화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 위임·위탁하는 문화시설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의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청소년 문화시설 이용지원) 시장은 청소년 문화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 위임·위탁하는 문화시설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조의2제2항의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6조의2(청소년 문화시설 이용지원) 시장은 청소년 문화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 위임·위탁하는 문화시설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조의2제2항의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